

시험정보

· 시험과목 및 방법

구 분	교 시	시험과목	문항수	시험시간	시험방법
제1차 시험	1	1. 재정학 2. 세법학개론(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조세범처벌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,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)	과목당 40문항 (총 80 문항)	80분 (09:30~ 10:50)	객관식 5지택일형
	2	3. 회계학개론 4. 상법(회사편)·민법(총칙)·행정소송법(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)중택1 5. 영어(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)	과목당 40문항 (총 80 문항)	80분 (11:20~ 12:40)	
제2차 시험	1	1. 회계학1부(재무회계, 원가관리회계)	각4문항	90분 (09:30~ 11:00)	논술형
	2	2. 회계학2부(세무회계)		90분 (11:30~ 13:00)	
	3	3. 세법학1부 (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)		90분 (14:00~ 15:30)	
	4	4. 세법학2부 (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지방세법·지방세기본법·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중 취득세·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, 조세특례제한법)		90분 (16:00~ 17:30)	

시험정보

· 합격기준

구 분	합 격 결 정 기 준
제1차 시험	<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>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
제2차 시험	<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>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-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-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-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,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.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-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-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: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-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: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.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<계산식> 제1호가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*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

· 면제대상자(제1차 시험)

- 국세(관세 제외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10년 이상인 자
-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10년 이상인 자로서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20년 이상인 자
-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

(※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)

· 결격사유 / 제2차 시험 일부과목(세법학) 면제대상자

- <http://www.q-net.or.kr/> 큐넷 홈페이지